

10.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재경경제부공고 제1998-75호 1998. 5. 28

주 요 골 자

- 가.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당해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유동화 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 나.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2개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 다. 자산을 양도하여 공고 및 등록을 마친 때에는 민법상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유동화자산중 담보로 제공된 물권이나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소유권의 경우 그 등록일자에 등기를 한 것으로 봄(안 제8조)
- 라.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감리의 위임을 받은 자산관리자는 고유자산과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동 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함(안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 마.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15조제1항)
- 바. 유동화전문회사의 회사형태를 유한회사로 하도록 하고, 동사원은 1인 이상으로 하는 등 동 회사의 설립을 용이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사.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

- 아. 유동화전문회사의 성격상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법상의 사채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30조)
- 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신탁받거나 양수받은 수탁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별도인가를 받지 않고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차.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당해 자산유동화의 이해관계인에게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개정이유

경제의 개방화·자율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이에 적응하기 위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현상황에서 동기관들이 가진 자산담보부채권을 증권화하여 투자자들에게 원활히 매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부채를 감소하고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구조조정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그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동화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유가증권·물건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 가. 자산보유자가 가진 다음의 재산권
 - (1) 대출채권 및 이에 관한 담보권 기타 부수하는 권리(다른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한 경우를 포함 한다)

- (2) 물품 및 용역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이하 “(생산자 등)”가 취득한 매출채권으로서 자산보유자가 생산자 등으로부터 양수한 것
- (3) 부동산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 (4) 주식 기타 유가증권
- (5) 신탁수의권
- 나. 시설대여업자의 다음의 권리 또는 물건
- (1) 시설대여채권, 시설대여물건 및 이에 관한 담보권 기타 부수하는 권리
- (2) 연불판매대금채권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채권 및 이에 관한 담보권 기타 부수하는 권리
- 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유가증권, 물건 기타의 재산권
2.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사채권, 약속어음, 신탁수의증권 또는 증서, 출자증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3.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한 자 또는 그로부터 이를 양수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를 말한다.
- 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라. 보험업자에 의한 보험회사
-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업공사
-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경영여신업자
- 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4. “자산유동화”라 함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자산(신탁회사가 유동화자산을 수탁받거나 수탁받은 금전으로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고, 당해유동화자산의 관리·운영·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전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자산유동화만을 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2장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자산유동화를 위하여 당해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당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유동화자산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보유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이 장의 적용에 있어 유동화전문회사로 본다.

③제2항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법인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등록을 마친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3조, 외국환관리법 제21조 및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발행인등록·신고수리·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등록의 신청) ①제3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5조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유동화계획기간
2. 유동화증권의 총액·내용 기타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3. 유동화자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등록의 거부사유)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탁을 받은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필요한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

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국내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양도의 공고 및 등록)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자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에게 환매·양도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유동화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유동화자산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에 관한 민

법의 특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등록이 마쳐진 때에는 당해 유동화자산의 채무자(유동화자산인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등록일자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등록이 마쳐진 때에는 유동화자산중 담보로 제공된 물권이나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소유권의 경우 그 등록일자에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③자산보유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등록이 마쳐진 유동화자산중 담보로 제공된 물권이나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소유권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자산보유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등록이 마쳐진 물권을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등록이 마쳐진 후 자산보유자의 파산, 인수·합병 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중 담

보로 제공된 물권이나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소유권에 대하여 즉시 등기하여야 한다.

⑥자산보유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등록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할 때까지는 채무자는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제9조(유동화자산에 관한 서면의 열람) ① 자산보유자의 채권자, 유동화자산의 채무자, 유동화증권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 기타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청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산관리위임계약) ①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제8조에 의한 대항조건을 갖춘 때에는 자산보유자에게 당해 자산의 관리를 위임하는 자산관리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자산유동화계획에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유동화 전문회사는 자산관리 위임계약의 해제에 의한 자산보유자의 변제수령권한의 소멸로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보유자의 변제수령권한의 소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자산관리위임계약에 의하여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에 한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자산관리자의 구분관리의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의 위임을 받은 자산관리자는 당해 유동화계획에 따른 업무에 속하는 자금·유가증권·소유물 기타의 재산권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영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과 유동화자산)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관리 되는 재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따른 회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관리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기타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3조(장부비치의무) ①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있어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무를 명백히 처리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자산보유자 등의 의무) ①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위반하여 양도한 자산 및 이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파산법·화의법 및 회사정리법에 따라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보전관재인·관리인·보전관리인 기타 유사한 직무를 행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② 채무자가 제8조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경우에는 자산보유자가 한 제1항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제15조(진정한 매매행위 등)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양도가 매매계약에 의한 것일 것
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양도한 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자산보유자는 이를 가지지 아니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처분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제외한다.

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양도된 자산의 대가로서 자산보유자에 대한 별도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할 것

라. 유동화전문회사가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자산보유자의 양도된 자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파산법 제54조(임대차계약) 및 회사정리법 제106조(임대차계약 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은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자산보유자가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금전으로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신탁법 및 신탁업법 적용의 특례)

- ①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탁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에 의한 처분명령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②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신탁받거나 취득한 신탁회사가 동 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③신탁회사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탁자의 책임은 신탁재산을 한도로 한다.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제1절 설립 및 운영

- 제18조(회사의 형태)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 ②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자산유동화의 목적에 반하거나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

편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발기인 등의 수)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은 상법 제54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사원총회) ①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제21조(이사회)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치는 이사회 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제22조(대표이사 등의 선관의무) ①유동화전문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동화계획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는 제1항의 주의를 소홀히 한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이사는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3조(상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

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업무

제24조(업무)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가. 유동화자산의 양수·재양도 또는 신탁
-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 다. 자산유동화계획 수행을 위한 계약체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
- 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처분

- 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여유금의 투자
- 바. 기타 위 각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제25조(업무의 위임)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회사의 운영 기타 그 업무의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범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절 해산 및 청산

제26조(해산이유) ①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 또는 자산 유동화계획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
3.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3분의 2이상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다.

4. 파산

②유동화전문회사는 해산된 경우에도 당해 유동화계획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 목적법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합병의 금지) 유동화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제28조(정산인 등의 선임)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1인의 정산인 또는 파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제29조(상법 등의 적용) ①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산유동화의 목적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 한 상법, 증권거래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증권거래법 제8조에 의하여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하여야 하 서류에 제4조에 의하여 이미 제출된 자산유동화계획에 기재되었거나 첨부된 것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부분을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사채발행)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0조(사채총액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신탁수익증권의 발행)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신탁받거나 양수받은 수탁자는 신탁업법 제17조의2(수익증권의 발행)제11항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장 감 독

제32조(사업보고서의 제출) 유동화전문회사는 사업년도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사업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검사) ①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의 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제2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개선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범위내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기타 운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 · 제11조 · 제22조 내지 제24조 · 제26조 · 제28조 ·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

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때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제16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5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제36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7조(등록취소 등의 경우의 채무의 이행)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유동화자산에 관한 거래를 종결하는 목적의 범위내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본다.

②유동화전문회사는 해산된 경우에도 그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를 제공·활용하는 자산보유자에 대하여는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동법 제23조3항(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에도 불구하고 당해 자산유동화의 이해관계인에게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9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적정한 사용) 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수 또는신탁받은 자, 그로부터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유동화자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에 관한 조사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벌 칙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6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유동화에 관한 업무를 행한 자
2. 제5조(제16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을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7조(제16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등록없이 자산을 양도한 자
4.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지정한 장소에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공고 및 등록이 마쳐진 물권을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자

5. 제27조(제16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병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6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산을 고유자산과 구분관리하지 않는 자

2. 제22조(제16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그 직무를 집행하지 않은 자

3. 제25조(제16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금을 운용하거나 채무부담한 자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즉시 발기하지 않은 자

2. 제32조(제16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

출판자

3. 제33조(제16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3조(과태료)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6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자

2. 제23조(제16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부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후에 유동화전문회사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 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회보